

서울새활용플라자 새활용(업사이클) 공간조성 사업

2017. 11

서울새활용플라자 새활용(업사이클) 공간조성 사업

소 속 서울디자인재단 공간마케팅
전 화 02-2153-0412
이 메 일 mhpark@seouldesign.or.kr

발주기관 서울디자인재단
홈페이지 www.seouldesign.or.kr

서울새활용플라자 새활용(업사이클) 공간조성 사업

I 사업안내

1. 사업개요

- 1) 사업명 : 「서울새활용플라자 새활용(업사이클) 공간조성 사업」
- 2) 사업장소 : 서울새활용플라자(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)
- 3) 사업기간 : 계약일 ~ 2017. 12. 22
- 4) 개 관 일 : 2017년 9월 5일
- 5) 사업예산 : 90,000천원(부가세 포함)

2. 사업방향

- **업사이클링 분야(업사이클링 디자인) 인식 확산**
 - 전시, 교육 등 콘텐츠 발신으로 유행선호 낡고 오래된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필요
 - 시민참여, 소통, 체험형 콘텐츠로 디자인을 통한 업사이클링 문화와 인식 확산
- **서울시 자원순환 생태계 구현과 업사이클링 일상화 트렌드 제시**
 - 자원순환을 위한 친환경 업사이클링 에코 라이프 스타일 제시
- **새활용플라자의 모든 콘텐츠의 전시, 교육, 홍보프로그램 연계**
 - 업사이클링 분야 전문가, 예비창업가, 시민, 기업가 등이 참여한 콘텐츠 개발
 - 업사이클링 소재를 중심으로 전시,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전략 모델의 사업실행

3. 사업내용

- 방문객으로 하여금 100% 새활용(업사이클) 공간으로 인지될 수 있는 내부 공간 및 환경 조성
- 서울새활용플라자 내외부 공용공간(외부 데크 및 진입계단 포함)에 설치예정
- 업사이클 관련 가구, 인테리어, 안내사인, 예술작품 등으로 인해 업사이클 공간으로 인지될 수 있는 창의적인 작품으로 제안되어야함
- 제안한 디자인 설치물 및 작품은 업사이클과 관련하여 전시, 교육적으로 상

- 당한 대표성을 지니며,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상징하는 중요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
- 서울새활용플라자의 공간 아이덴티티와 설치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.
- 방문객의 투어시 자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내물과 부가설명(제작과정, 소재, 업사이클 방법) 등이 설치 또는 구비되어야 함
- 이외에도 교육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는 설치물과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공되어야 함
- 설치물의 관람환경이 최적화 되도록 추가적인 인테리어 및 장치·장비(조명 시설 등)등의 환경 계획 및 시공도 본 사업의 범위에 포함됨

II 사업세부계획

1. 사업목적

- 방문객으로 하여금 100% 새활용(업사이클) 공간으로 인지될 수 있는 내부 공간 및 환경 조성

2. 사업범위 및 내용

- 서울새활용플라자 내외부 공용공간(외부 데크 및 진입계단 포함)에 설치예정
- 업사이클 관련 가구, 인테리어, 안내사인, 예술작품 등으로 인해 업사이클 공간으로 인지될 수 있는 창의적인 작품으로 제안되어야함
- 제안한 디자인 설치물 및 작품은 업사이클과 관련하여 전시, 교육적으로 상당한 대표성을 지니며,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상징하는 중요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
- 서울새활용플라자의 공간 아이덴티티와 설치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
- 방문객의 투어시 자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내물과 부가설명(제작과정, 소재, 업사이클 방법) 등이 설치 또는 구비되어야 함
- 이외에도 교육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는 설치물과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는

별도로 제공되어야 함

- 설치물의 관람환경이 최적화 되도록 추가적인 인테리어 및 장치·장비(조명 시설 등)등의 환경 계획 및 시공도 본 사업의 범위에 포함됨

3. 주요 공간별 사진 및 과업범위

- 대상공간 : 층별 유희공간, 로비, 야외 데크, 복도, 화장실, 계단, 추락방지망 등 공용공간

※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제안하되 아래의 공간이 모두 적용해야하는 대상은 아니며 방문객들에게 가장효과가 장소를 선택하여 업사이클 조성계획을 수립함



- 로비공간은 기존 조경을 고려하여 안내데스크 우측 벽면을 중심으로 공간조성 필요
- 안내데스크 우측 벽면 : 정문으로 진입시 가장 크게 보이는 면으로 과업대상 검토 필요



- 안내데스크 우측 벽면 : 정문으로 진입시 가장 크게 보이는 면으로 과업대상 검토 필요
- 로비 상부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음



• 로비 상부는 천창으로 구성되어 지상1층에서부터 5층까지 오픈되어 있음



• 로비 상부 중정공간 :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망이 설치됨



• 지상3층 공용공간 : 화이트 컬러로 적용되어 업사 이클 관련 가구, 게시물 거치대 등의 조성이 필요함



• 지상5층 복도공간 : 방문객의 주요 이동통로



• 지상1층 정문 출입구 : 로비와 연결되고 방문객이 가장 처음 접하는 공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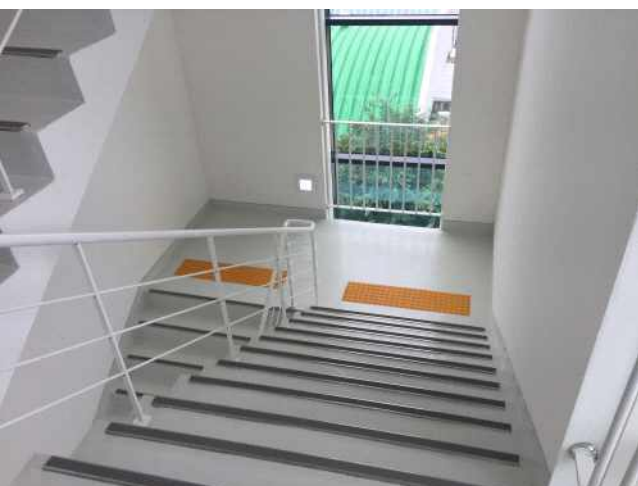
• 지상2층 출입구(전면 계단과 하수도 과학관 연결) : 하수도 과학관 관람객들이 처음 경험하는 공간



- 지상 5층 공용공간 : 공용공간이 복도에 비해 크게 구성되어 유희공간으로 보여짐
- 지상 5층 공용공간 : 휴게공간으로 활용하여 방문객 및 입주자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조성



- 지상2층 연결데크 : 층별로 데크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및 실행안 필요
- 지상3층 외부 데크공간 : 입주자 및 방문객이 사용하는 외부 공간



- 각 층 화장실 : 기본적인 시설과 화이트로 도색 되어 있음
- 각층 계단실 : 기본적인 도색과 점자블럭 설치

4. 공간구성 및 현황

■ 새활용플라자 추진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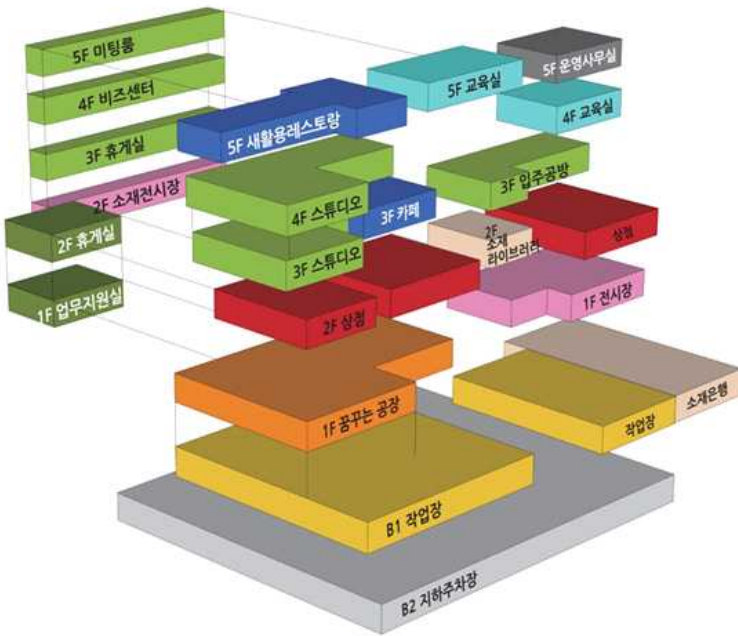


서울새활용플라자를 중심으로 중고차매매시장, 자동차산업문화관, 중량물재생센터, 하수도과학관, 공원 등이 어우러진 차세대 산업 일자리 창출, 시민 가치소비문화 확산,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국내 최대 업사이클 타운 조성

■ 준공현황



■ 층별 공간구성 및 면적 건물연면적: 16,540㎡ (지하2층~지상5층)



5	레스토랑 교육실 미팅룸	운영사무실 총감독실 휴게실
4	스튜디오 / 교육실 휴게실	비즈니스센터
3	스튜디오 카페 휴게실	
2	상점1 상점2 상점3	소재전시장 휴게실
1	전시장 꿈꾸는 공장 미디어룸	어린이방/수유실 창작실 업무지원실
B1	소재은행 작업장 방재센터	하역장
B2	지하주차장 기계/전기실 창고	

5층 (1,541)	회의실/교육실 (345)	식당 (181)	열린공방 (111)	주방 (108)	공용면적 (796)	
4층 (1,417)	공방 (462)	교육실 (141)	연면적 : 16,540㎡		공용면적 (814)	
3층 (1,604)	공방 (566)	카페 (146)			공용면적 (892)	
2층 (1,835)	작품/제품 진열시설 (689)	소재 라이브러리 (164)			공방 (45(별관))	주민 소통방 (89)
1층 (2,287)	팹랩 (꿈꾸는 공장) (790)	공방 (163)(별관)	전시장 (379)	사무실/다목적실 등(301)	안내/기부실 (52)	공용면적 (877+8(별관))
지하1층 (3,683)	선별장, 공작실 등 작업장, 재사용작업장 (1,475)	소재은행 (548)	하역장 (587)	기타부대 (153)	공용면적 (1220)	
지하2층 (3,956)	주차장 (2,307)	창고 (579)	기계전기 (721)	기타부대 (116)	공용면적 (233)	

Ⅲ 과업수행에 따른 준수사항

1. 일반사항

-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,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의 취지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시민홍보 및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,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디자인재단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
-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,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선정업체(이하 계약상대자라 함)가 부담함. 단,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서울디자인재단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
-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, 서울디자인재단이 요구할 경우 반드시 과업진행사항 보고를 하여야 하며, 과정진행 중 또는 과업완료 후에 서울디자인재단 또는 서울디자인재단의회의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
- 과업의 수행은 서울디자인재단과 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, 서울디자인재단이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 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
-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내용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서울디자인재단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
- 사업기간 중 사업비를 사용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유·무형 자산(시설, 장비 등)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 일체는 서울디자인재단에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
-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,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

2. 사업의 시행

-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디자인재단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함
-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서울디자인재단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
- 서울디자인재단은 계약상대자의 사업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행사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
-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및 착수 신고 시 제출된 참여 자격 및 과업수행자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디자인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서울디자인재단이 과업수행자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하여야 함
-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서울디자인재단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
-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참여자의 피해를 보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,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
-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수행 중 취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누설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

3.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

-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관련 제작물 일체(준공 사진첩, 준공내역서 포함)를 준공일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

4. 손해배상 등

-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.사고에 대하여 민.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. 다만,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
-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디자인재단이 제 3자에게 본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서울디자인재단에게

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

5. 계약의 해지 등

- 서울디자인재단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계약의 해지로 인해 서울디자인재단의 손해(신뢰 실추, 손해배상 등)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
-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
-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서울디자인재단이 인정하였을 경우
- 서울디자인재단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
- 본 제안요청서,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해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
-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서울디자인재단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
- 선정된 업체(단체)가 계약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(단체)로 변경할 수 있음

6. 사업비 정산 등 회계처리

- 사업비 지급은 사업 종료 후 정산 완료 시 지급함으로 원칙으로 함. 단, 예산절감 및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반드시 선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0% 이내 선지급이 가능함
- 사후정산의 대상이 되는 항목의 제비용은 사후 정산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, 정산 후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결과에 따라 처리함

- 사업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선급금 청구 시 서울디자인재단을 피보험자로 하는 「이행보증보험 증권」원본, 사용계획서, 선금지급 신청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보증(보험) 기간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함
-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서울디자인재단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, 예산집행은 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 매출전표, 현금영수증 등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영수증을 통해 지출하여야 함

7. 서울디자인재단 지도·감독

- 서울디자인재단은 필요한 경우에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,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
- 서울디자인재단은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
-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디자인재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함